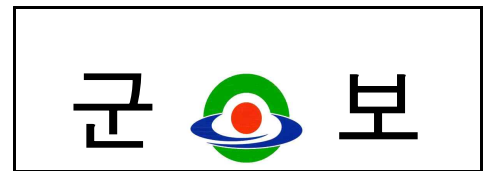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4호 2022. 11. 16.(수)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406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407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408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140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 3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 홍보소통담당관 신설(안 제3조)
- 주민복지실 분과 →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안 제3조)

나. 부서 명칭 변경(안 제3조)

- 기획감사실 → 기획예산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담당관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행정지원실, 홍보소통담당관, 재무과, 새마을경제과,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② 실·과·담당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나.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에 관한 사항
- 다.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군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 복무 단속에 관한 사항
- 마. 법제·소송·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 바. 지역 인구정책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사.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서무, 보안, 복무, 기록물관리,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다. 행정구역, 선거에 관한 사항
- 라.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마. 공무원 단체,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평생교육,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사.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나.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 다. 군정 홍보 및 보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홍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 마. 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4.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지방세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 징수에 관한 사항
- 나.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다. 세외수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군 금고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 마. 세출예산의 계약·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 바. 물품구입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5. 새마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다. 국민운동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 바.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라. 자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 마. 복지대상자의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
- 바.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 나. 여성정책,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 다. 다문화가족 업무에 관한 사항
- 라.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 마.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민원행정 종합, 주민등록, 여권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나.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다.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
- 라. 도로명주소 및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마.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9.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나.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관광시책, 마케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 라.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마. 삼강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예천박물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사항
- 라. 수질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마.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 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11.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농산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다. 식량작물 육성,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 라.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마. 농산물 유통지원 및 시장개척을 위한 유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 바. 원예, 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
- 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산림경영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산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 다. 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 라. 산림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

13.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축산행정 종합·기획·조정
- 나.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 업무
- 다. 축산업 허가 및 등록관리
- 라. 축산물 유통
- 마. 가축방역

14.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나. 국유재산(도로), 접도구역 관리
-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라.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 마. 도로(군도, 농어촌도로), 교량 관리
- 바. 교통 운수행정의 종합·기획·조정
- 사. 자동차 등록 및 검사

15.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농촌협약, 농촌뉴딜
- 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6.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 나. 도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다.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 마. 스마트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 17.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경관에 관한 사항
 - 다.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예천온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8.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가. 안전재난정책 총괄·조정 및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재해·재난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
 - 다.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라.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 마. 민방위 및 전시근로 등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 바.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제4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33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3. 농촌생활 개선사업 및 여성교육
4.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5.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지도
6.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7. 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8. 식량작물재배 기술지도
9.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10. 농업용미생물 생산 및 보급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농업인상담소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사업소장

- 가. 체육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나.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다.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 곤충연구소장

- 가. 곤충생태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곤충연구·개발 및 사육에 관한 사항
- 다. 유용곤충의 농가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맑은물사업소장

- 가.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반장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읍장·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예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⑨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⑩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⑪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⑫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⑬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⑮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⑯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예산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⑰ 예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⑱ 예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⑲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⑳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㉑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㉒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㉓ 예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	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일원
보문보건지소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일원
호명보건지소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3	호명면 일원
유천보건지소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일원
용궁보건지소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일원
개포보건지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일원
지보보건지소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일원
풍양보건지소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일원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2,내지1·2,원류리
대제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보건진료소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	백석,초향,고향,석묘,보곡리
부초보건진료소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	율곡,부초,시향,오류2리
천향보건진료소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321-5	천향1·2,관현1·2,진평1·2리
수계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2,수계1·2,작곡리
독양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2,기곡1·2
송곡보건진료소	예천군 호명면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중평보건진료소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월오2리
대은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2,향석1·2,무지리
경진보건진료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486-14	동송,경진,이사,금리
상월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2,마산,만화2리
지보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2,도장,도화2리
우망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2,청곡1·2리
청운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2·3,삼강,하풍리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관련)

사업소명	위 치
체 육 사 업 소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곤 충 연 구 소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
맑은물사업소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 : 3실 13과 2직속기관 3사업소

→ 2실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3사업소

- 홍보소통담당관 신설 (안 제6조)
- 주민복지실 분과 →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안 제9조~10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규 칙 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천군 본청의 실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과·담당관·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실·과장·담당관의 직급) 기획예산실장·행정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홍보소통담당관·재무과장·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새마을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주민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

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농촌활력과장·도시과장·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행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
2.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3. 군정 종합개발계획 수립
4. 의회운영 지원
5. 대규모 프로젝트 및 미래전략사업 추진
6.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방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8.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관리
9. 지역 인구정책 기획·조정
10.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11. 법제, 소송, 규제개혁 업무
12. 통계조사
13. 군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14. 공무원의 복무 단속 및 비위조사 처리
15. 공직자 윤리 및 재산등록
16. 그 밖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실) 행정지원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보안, 복무, 문서관리
2. 국내외 자매결연 등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3. 기록관 설치·운영

4. 조직, 정원, 인사, 공무원 임용
5. 행정구역관리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
6. 선거 및 투표관리
7. 주민자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8. 공무원 교육, 포상
9.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11.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12. 각종 학교 교육 지원
13. 예천군민장학회 운영 및 관리
14.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
15. 그 밖의 총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소통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소통기능에 관한 사항
5. 군정 사진 및 영상촬영에 관한 사항
6. 홍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7. SN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홍보에 관한 사항
9. 지역정보화,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0.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1.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부과 및 징수
2. 국세 위탁 부과 및 징수

3. 세무조사 및 세무비리 예방
4. 지방세 구제 업무
5. 기타물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6.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7. 체납 지방세 징수계획
8. 지방세 체납자 관리 및 체납처분
9.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10. 지방세 수입금 관리 및 결산
11. 세외수입 수입금 관리 및 결산
12. 군 금고의 감독
13. 기부금품 모집 통제
14.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15. 공사의 도급 및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
16. 공용차량 관리
17. 물품의 정수, 관리 및 채물조사
18. 복식부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19.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20. 청사 관리

제8조(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활성화 추진
2. 새마을단체 육성·관리
3.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지도
4. 전통시장 관리 및 현대화 사업 업무
5.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예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6.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7.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일반, 국가) 조성 및 시설 관리
12.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관리
13. 공장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14. 연료, 전기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업무
16. 발전소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7. 농촌가로등 관리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조정
2. 의사상자·이재민 구호 업무
3. 보훈대상자 및 단체관리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관리
5.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6. 민·관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8. 자활근로사업 추진
9. 긴급복지 및 이웃돕기 업무

10.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11.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
12. 복지대상자 제외 시 서비스연계 의뢰
13.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14. 의료급여업무 처리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
15. 장애인 복지 대책 총괄 수립 및 추진
1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
18. 장애인 생활안정 관리 및 지원

제10조(주민행복과) 주민행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노인사회참여 및 노인단체 지원
4. 노후소득 보장 사업
5. 재가노인복지 증진 사업
6. 노인 장기요양업무에 관한 사업
7.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8. 노인대학(노인교실)
9.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 감독
10.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시행
11. 여성·아동법인 등 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

12. 여성단체 지도 육성 및 활동 지원
13.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15.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16. 청소년 대책 및 선도·보호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19.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업무
20. 아동복지 증진
21. 취약계층 아동에 관한 업무

제11조(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 행정업무의 기획·조정
2. 창구민원의 즉결처리 및 민원24업무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4. 주민등록, 여권,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업무
5.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6.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
7.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8.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
9.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공시
10. 부동산중개업 등록 및 지도 단속

11. 부동산실거래 신고·검인
12.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이용실태조사
13. 도로명 주소사업에 관한 사항
14. 국가지점번호 관리 업무
15. 국가기초구역 관리 업무
16. 세계측지계좌표 전환
17. 지적재조사 계획수립, 사업지구 선정·추진
1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19.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
20.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퇴폐·변태영업 지도 단속
21. 위생업소 종업원 등 보건관리

제12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3. 공연장 등록 및 관리
4. 지방문화원 관리
5. 게임, 음악, 영상, 출판, 인쇄업 등 유통관련업 등록 및 관리
6. 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7. 문화재 지정·해제·보존 관리
8. 향교, 전통사찰 관리
9.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

10. 향토 문화 연구 조사
11. 관광 마케팅 종합기획
12. 관광안내 및 홍보
13. 곤충엑스포 및 예천세계활축제 지원
14. 유교문화권, 3대문화권 등 관광개발사업
15. 관광자원 기반 확충공사
16.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17.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제13조(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대기, 소음, 진동, 토양 분야 업무(배출시설 포함)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군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 수립
7. 탄소중립 2050 및 미세먼지 업무
8.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
9. 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10. 배출시설의 허가 및 지도점검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12. 환경오염원 조사·분석·측정 및 지도 감독

13. 폐기물 종합대책 수립
14.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업소 관리 감독
15. 생활 폐기물 관리
16. 클린예천 만들기 추진
17. 순환형매립장 관리 운영
1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운영
19.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운영
20.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통합 관리 운영

제14조(농정과) 농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
3. 농지전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4.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5. 식량작물 육성계획 수립
6. 고품질 쌀 생산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8. 비료, 농업자재 수급
9.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추진
10.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11.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업무
12.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3. 농촌인력 지원
1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및 운영
15.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및 운영
16. 산지유통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17. 공선출하조직 육성 및 운영
18. 농특산물 유통망 확충 및 직거래 사업
19. 주산단지 조성
20. 과수, 특용작물, 채소 생산기반 조성 및 화훼산업 육성
21. 과수 경쟁력 향상
22. 특용작물 증산 장려 및 보급
23. 잠업 생산 및 수급 조절
24.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25.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6. 디지털 혁신 농업 타운 업무

제15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계획 및 조림에 관한 업무
2. 산림경영계획 인가
3. 임목벌채 신고·허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4. 산림용 양묘, 군유림 관리
5. 산림소득사업 및 임산물 피해
6.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

7. 산지이용구분
8.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9. 산불예방 및 진화
10.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1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보호수 관리
12.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13. 도시숲 조성 및 관리
14. 공원 및 녹지관리
15.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
16.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17.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
18.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9.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20. 산촌생태마을 관리

제16조(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축산기반 조성
2. 축산업 등록제 관리
3. 사료수급, 초지조성 등 조사료 관련에 관한 사항
4. 한우, 젃소, 양돈, 양계, 양봉, 한봉 지원사업
5. 축산 재해·재난 업무
6. 축산물 이력제 업무(소, 돼지, 닭, 오리)

7. 예천한우 브랜드화 사업
8. 축산물 판매업소 인허가 및 부정축산물 단속
9. 축산분뇨 종합대책 추진
10. 축분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추진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12. 동물복지대책 추진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13.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추진(구제역, AI, ASF, 결핵, 브루셀라)
14. 가축 방역사업 추진
15.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
16. 동물병원 및 동물용 의약품 관련 업무(인허가)
17.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제17조(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국유재산(도로) 관리, 접도구역 및 도로부지 관리
3.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관리
4. 건설공사(국도) 수탁보상
5. 도계정비사업
6.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8.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9.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10. 도로 교량의 개설 보수(군도, 농·어촌도로)
11. 국도 및 철도건설사업 관련 업무
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및 관리
1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15. 이륜자동차에 관한 업무
1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 감독
17.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과·징수 업무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따른 부과·징수 업무
19.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행
2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1. 주차장에 관한 업무
22. 불법주정차, 무단방치 차량 지도 단속

제18조(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협약, 농촌뉴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육성, 마을만들기)
3.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농어촌형)
4. 신활력 사업
5.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 복지회관 건립 및 관리

7. 경지정리사업 및 받기반정비사업
8.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 한계농지 정비사업
12.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농촌빈집정비사업

제19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2. 군계획의 입안 및 정비
3. 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4. 군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5.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항
7. 개발행위 허가 및 관리
8. 도시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9.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
10. 도시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11. 도청신도시 공동구 유지관리
12. 자전거도로 건설 및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13. 도시재생 업무
1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형)

15.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17. 신도시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8. 공영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
2.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기촉탁 업무
3. 건축물 유지·관리 및 재해주택 조사 업무
4.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5.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6. 건축인·허가(신고), 사용승인
7. 공공건축물 건축협약
8. 건축사 지도 및 감독
9.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0.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예천온천장 관리 운영

제21조(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정책 총괄·조정
2. 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 재해·재난 등 각종 상황의 종합관리 및 종합상황실 운영

4.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5. 안전문화 운동 및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지원
6.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점검 및 관리
8.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9.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11. 재해위험지구 관리
12.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13. 골재채취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14.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16. 민방위대의 조직·편성·동원
17.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관리
18. 민방위 교육 훈련 및 홍보
19.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20. 영상기기(CCTV) 설치 및 유지관리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22조(소장 등) ① 예천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

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예천군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과의 사무분장)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
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4. 공중보건 의사 제도 운영
5.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 신고 및 허가
7. 헌혈 및 응급·재난의료에 관한 사항
8. 의·약업소 지도점검
9. 마약류 및 마약류 사범 관리
10. 감염병 예방 관리 업무

11. 감염병 질환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12.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13. 예방접종 사업
14. 진료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5. 구강보건사업
1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
17. 그 밖의 보건행정 등에 관한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 건강마을 조성사업
3. 건강증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4. 방문보건사업
5. 정신보건사업
6. 건강검진사업
7. 모자보건사업
8.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8. 치매관리사업
9. 자살예방사업
10. 치매안심센터 관리 운영
11. 그 밖의 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5조(소장의 직급)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와 소득개발과를 둔다.

② 농촌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27조(과의 사무분장) 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농산물 가공 및 농촌자원 활용 농가소득사업 지도
3.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소득사업 육성
4. 학습조직체 육성 관리(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5.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
6. 농업인 교육훈련 및 품목별 전문교육
7. 강소농 및 정보화 농업인 육성
8. 농업경영개선 지도
9.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10. 농업인상담소 운영
11.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소득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우량종자 보급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3. 농토배양 및 토양검정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
5. 과수, 시설채소, 일반채소, 화훼기술지도
6. 특용·약물작물 재배기술 지도
7. 지역특화작목 재배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장 운영
8. 농업용미생물 생산 보급 및 연구
9. 가축사양관리 및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
10. 초유은행 운영

제28조(읍·면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29조(소장의 직급) 체육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곤충연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사업소의 사무분장) 사업소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사업소

- 가.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 지원
- 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엘리트체육 업무
- 다. 양궁실업팀, 육상실업팀 운영
- 라.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 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청소년수련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곤충연구소

- 가. 곤충연구소 시설물의 보수·확장
- 나. 곤충생태체험관 및 곤충생태공원 운영
- 다. 생태원 관람객 교육 및 홍보
- 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계획 수립
- 마. 유용곤충 연구 및 생산
- 바. 정서곤충의 발굴과 대량 사육 기술연구
- 사. 산업곤충의 농가 보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3. 맑은물사업소

- 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계약, 지출 전반
- 나. 공기업 결산, 자산관리 및 평가, 공시전반
- 다. 상하수도요금 요율개선
- 라.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급수구역 확장사업
- 마. 마을상수도 및 농촌생활용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운영 유지관리
전반

- 바. 지방상수도 위탁 업무 관리 및 감독
- 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자. 하수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전반
- 차. 오수·분뇨 관련 영업 인·허가 및 관리
- 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제5장 읍·면

제31조(읍장·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읍장·면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부읍장·부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두되, 부읍장·부면장은 총무팀장이 겸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으로 하고,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예천군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예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⑤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2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예천군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⑦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별표 1]

읍·면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제28조 관련)

명 칭	위 치	담당구역
예천읍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앞길 2	예천읍일원
용문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8	용문면일원
효자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효자로 1487	효자면일원
은풍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은풍면일원
감천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충효로 1389	감천면일원
보문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48	보문면일원
호명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오천길 2	호명면일원
유천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99-8	유천면일원
용궁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읍부1길 45	용궁면일원
개포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길 28-14	개포면일원
지보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보면일원
풍양면농업인상담소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삼강로 451-1	풍양면일원

[별표 2]

읍장·면장의 직급

(제31조 관련)

읍면행정복지센터	직 위	직 급
예천읍행정복지센터	예천읍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용문면행정복지센터	용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효자면행정복지센터	효자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은풍면행정복지센터	은풍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감천면행정복지센터	감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보문면행정복지센터	보문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호명면행정복지센터	호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유천면행정복지센터	유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용궁면행정복지센터	용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포면행정복지센터	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보면행정복지센터	지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풍양면행정복지센터	풍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 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6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과장)이 겸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과장으로 두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 중 1명이 부읍장·부면장을 겸한다.
5.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6.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4명)의 범위에서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인구가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인 시의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8년(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간은 합쳐지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수만큼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7.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가 실·국의 설치기준보다 1개 실·국을 감축(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두었던 한시기구를 감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실장(국장급)·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 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가 실장(국장급)·국장을 4급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범위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8의2.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 그 구청장을 보좌하는 1명의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모든 구

나. 가목 외의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제8호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 구 중 1개의 구

9.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감사업무를 담

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 1명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 기획, 지역경제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59명 → 769명 / 증 10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755명(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59	369	14	108	41	227	
개정안	769	380	14	112	42	221	
증 감	+10	+11	-	+4	+1	-6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일반직(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개정안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증 감	+9	-	-	-	+2	+6	+1	-	-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직 · 지도직(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2	-	8	3	31
개정안	43	-	8	3	32
증 감	+1	-	-	-	+1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59명”을 “76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45명”을 “7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69	380	14	112	42	26	195
정무직 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 계	725	374	14	78	38	26	195
4급	2	1	-	1	-	-	-
4급 내지 5급	3	2	-	-	-	1	-
5급, 5급 내지 연구관	35	16	3	2	3	-	11
6급 이하	682	353	11	74	35	25	184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 계	-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
연구직 계	8	5	-	-	3	-	-
연구사	8	5	-	-	3	-	-
지도직 계	35	-	-	34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2	-	-	31	1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제29조 및 <u>제30조제1항</u> 에 따라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제30조제1항 및 제2항</u> ----- ----- ----- -----.
제2조(정원의 총수)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759명</u> 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769명</u>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745명</u>	1. ----- <u>755명</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필요한 비용

※ 정원조정 내역 : 759명 ⇨ 769명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개정안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증 감	+9	-	-	-	+2	+6	+1	-	-	-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2	-	8	3	31
개정안	43	-	8	3	32
증 감	+1	-	-	-	+1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3,611백만원 재정지출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	-	-	-	-
세 출 (백만원)	695	708	722	736	750	3,611
총비용 (백만원)	695	708	722	736	750	3,611

※ 최근 5년간(2018~2022)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1.9%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695	708	722	736	750	3,611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695	708	722	736	750	3,611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행정지원실 지방행정사무관 박태환(054-650-608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695,388천 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695,388	
5급 +2명	7,520천원 × 12월 × 2명 (5급 기본급 평균 6,070천원 / 각종수당 1,450천원)	180,480	
6급 +6명	5,812천원 × 12월 × 6명 (6급 기본급 평균 3,885천원 / 각종수당 1,927천원)	418,464	
7급 +1명	4,116천원 × 12월 × 1명 (7급 기본급 평균 2,676천원 / 각종수당 1,440천원)	49,392	
지도사 +1명	3,921천원 × 12월 × 1명 (지도사 기본급 평균 2,589천원 / 각종수당 1,332천원)	47,052	

※ 2022년 10월까지 인건비 지급현황을 기준으로 비용 산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1.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59명 → 769명 /증 10명(안 별표 1)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755명(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59	369	14	108	41	227	
개정안	769	380	14	112	42	221	
증 감	+10	+11	-	+4	+1	-6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일반직(안 별표 1)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개정안	726	1	2	3	35	178	207	178	119	3
증 감	+9	-	-	-	+2	+6	+1	-	-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직 · 지도직(안 별표 1)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2	-	8	3	31
개정안	43	-	8	3	32
증 감	+1	-	-	-	+1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